



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:

2019-2020 학년도에 귀 자녀는 보건 서비스(예, 약물투여 등) 또는 재활법 504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.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도 마다 서비스 및/또는 편의제공을 위한 신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. 신규 승인은 귀 자녀가 여전히 학교에서 이러한 서비스 및/또는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또한 귀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 및/또는 편의제공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업데이트된 약물 투여 양식(Medication Administration Forms: MAF)을 통해 학교 간호사는 귀 자녀의 담당 의사가 전년도 자녀에게 처방했던 약물이나 치료에 변화를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학교 간호사는 자녀분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.

업데이트된 편의제공 요청서는 자녀분의 504 계획에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면, 학교 504 팀에 이런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. 504 팀은 적절한 편의제공이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.

많은 부모님들께서 매년 이때쯤 자녀의 연례 신체검사 및 캠프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합니다. 이 때, 다음 학년도 준비도 미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. 이번에 자녀가 의사와 약속을 잡은 경우, 본 안내문에 첨부된 편의제공 양식도 함께 작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투약 양식 좌측 상단에 자녀의 최신 사진을 부착하십시오.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귀 자녀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
귀 자녀가 2020-2021 학년도 시작과 함께 승인된 서비스를 받게 하시려면 반드시 **2020년 6월 1일 또는 가능한 빨리** 양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당뇨 MAF를 제외한 모든 기타 약물 투여 양식(MAF)을 보내실 주소:

Director of Nursing
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& Mental Hygiene
 Office of School Health
 Gotham Center
 42-09 28th Street, CN-25
 Queens, New York 11101-4714

- 편의제공 요청서(504 편의제공 학부모 양식, HIPAA 및 의료 편의제공 요청서)를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:

(이름) _____ ,

(이메일 주소) _____

안녕히 계십시오.